

第 17回 鷄龍市議會

第 1次 定例會

2005. 7. 5(火)

檢 討 報 告 書

- ① 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② 계룡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③ 계룡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두마면 광석리의 관할구역중 대전~논산간 국도를 사이에 두고 나분들과 합판리로 나누어져 있어, 주민간 협력체제유지와 행정수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려워 지리적 여건에 따라 광석리를 광석1리 및 광석2리로 分里하고 그에 따른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임.

□ 主要内容

- 제2조제2항 별표2중 두마면 광석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.

면·동	법정리명	이장정수	행정리명	관할구역(자연마을명)
두마면	광석리	2	광석1리	옹골, 방죽안, 강당, 나분들
			광석2리	합판리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두마면 광석리의 관할구역중 대전~논산간 국도를 사이에 두고 나분들과 합판리로 나누어져 있어, 주민간 협력체제유지가 어렵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려워서,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, 광석리를 광석1리 및 광석2리로 分里하고 그에 따른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광석리 및 금암 주공아파트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里 및 統을 分離하고, 금암지구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최일선 행정조직을 조속히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수행의 지속성과, 관련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이루고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제4조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광석리를 광석1리와 광석2리로 分里.
 - 금암 3통을 금암 3통과 4통으로 分統.
 - 금암1통 1반을 1반과 5반으로 分班.
 - 신성 1차아파트단지에 금암 5통, 금암 6통, 금암 7통과 19개반 신설
 - 우림아파트단지에 금암 9통, 금암 10통, 금암 11통, 금암 12통과 31개반 신설
 - 신성 2차아파트단지에 금암 13통, 금암 14통, 금암 15통과 20개반 신설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근거로, 광석리 및 금암 주공아파트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里 및 統을 分離하고, 금암지구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최일선 행정조직을 조속히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수행의 지속성과, 관련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이루고자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—계룡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—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(2005. 4. 11, 규칙 제64호)이 개정됨에 따라, 市의 조직에 맞게 개정·운영코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
 -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총무과장” 으로 개정코자 함.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안은,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,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근거로, 市의 조직에 맞게 개정·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,
-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